

섹션 300.34 신속 공청회를 위한 특수 파트.

이 규정은 이사회 앞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2년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사건 또는 상황에서 여러 청구가 발생하거나, 모든 당사자가 신속 공청회에 동의하거나, 의장이 달리 신속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속 공청회를 위한 특수 파트에 관한 노동자 보상법 섹션 25의 하위 항목 3의 문단 (d)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A) 어떤 상황에서도 이사회 앞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2년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사건 또는 상황에서 여러 청구가 발생하거나, 모든 당사자가 신속 공청회에 동의하거나, 의장이 달리 신속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혹은 이해 당사자에 의해 해당 케이스를 신속 공청회를 위한 특수 파트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파트로 이전된 케이스의 경우 이 파트에 지정된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공청회를 담당합니다.

(b) 각 이해 당사자는 이전 명령이 이루어진 후 2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한 진술서와 함께 해당 당사자가 노동자 보상법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 준비가 되었다는 진술서 또는 필요한 추가 조사와 해당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위원회와 모든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 신속 공청회를 위한 특수 파트에서의 공청회:

- (1) 이 파트에 지정된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진행합니다.
- (2) 해당하는 경우 모든 미해결 문제가 한 공청회에서 다루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 (3) 실행 가능한 경우 케이스 파일이 존재하고 보관되어 있는 지방 당국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4) 이전 명령 후 30일 이내에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d) 신속 공청회를 위한 특수 파트의 절차에 출석하는 보험회사 또는 자체 보험 부담 고용주의 모든 변호사, 면허 보유 대리인 또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해당 케이스의 사실 관계,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서류 및 관련 법을 숙지해야 하며, 이 파트의 섹션 300.5 및 300.36 조항에 따라 이전에 제기된 문제를 제한할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미해결 문제를 협상하고 합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 긴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 공청회를 위한 특수 파트의 재판 일정에 배치된 케이스는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중단 또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케이스를 중단 또는 지속하려는 당사자는 그러한 중단 또는 지속의 이유를 서술한 서면 요청서를 노동자 보상법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중단 또는 지속을 승인하는 경우, 케이스는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해당 중단 또는 지속 후 30일을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 또는 지속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기록된 대로 확정됩니다.

(f)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중단 또는 지속 요청서를 검토한 후, 중단 또는 지속 요청이 긴급하지 않고 사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1) 보험회사나 고용주가 요청한 경우, 위원회에 \$1,000 지급. 해당 보험회사나 고용주가 해당 보험회사나 고용주의 직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면허를 보유한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또는 면허 보유 대리인이 해당 벌금 지급을 부담해야 합니다.
- (2) 변호사 또는 면허를 보유한 대리인이 대리하는 청구인이 요청한 경우, 이사회에 \$500 지급. 변호사 또는 면허 보유 대리인이 직접 해당 벌금을 지급해야 하며 청구인의 보수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중단 또는 지속을 요청하는 미출석 청구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g) 노동자 보상법 섹션 25의 하위 항목 3의 문단 (d)와 이 섹션에 따라 신속 공청회의 특수 파트에 속한 노동자 보상법 판사의 명령 또는 지시는 사고 또는 직업병 확인서, 통지, 인과 관계 혹은 금전적 지급 판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판 결과 또는 모든 미결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노동자 보상법 섹션 23에 의해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없습니다.

(h) 이 섹션은 수정된 바와 같이 1997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해당 날짜 이후 제출된 모든 새로운 청구에 적용됩니다.